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Abbot 리덕틸 특허기술과 상이 ... 특허법원에서도 패소

한미약품이 비만치료제 특허권을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기업 Abbot와 벌인 2건의 특허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한미약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bbot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슬리머>가 Abbot의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며 Abbot가 낸 것으로, 법원은 한미약품측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한국·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결정성 시부트라민>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이 Abbot의 <시부트라민> 조성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1월15일에는 특허법원이 Abbot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Abbot측이 발명한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 조성물>을 비만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며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결정성 시부트라민 메탄술폰산염 및 그 조성물>까지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독일 Abbot가 출시한 비만치료제 리덕틸은 기존의 비만증 치료제가 가진 부작용을 극복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에서 연간 3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광장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계속 비만증치료제를 생산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매출 600억원대 이상의 비만증치료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7>